광고산업 진흥법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1 발의연월일: 2024. 6. 18.

발 의 자:김승수·김예지·임이자

우재준 • 주진우 • 성일종

박충권 • 주호영 • 신성범

김기현 • 권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광고산업은 21세기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이끌 수 있는 산업으로서 국내 광고시장은 19조원이 넘는 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광고산업은 단순한 상품 판매수단이나 마케팅의 하위 요소에 머무르는 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산업의 재정적 존립기반이 되는 핵심산업이며, 문화콘텐츠의 중요한 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문화산업이기도 함.

그러나, 광고산업을 정의하고 체계적이며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 법률이 없어 조사·연구, 인력 양성,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이나 산업 생태계 보호 등 산업 진흥체계 마련에 대한 시장과 업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광고문화를 진흥하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디지털 기술 발전, 글로벌화 등 시 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육성 및 중소형 광고회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산 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고 산업을 효과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건전한 광고문 화 확산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광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관리할 수 있음(안 제4조).
- 다. 정부는 광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발된 광고기술이나 광고서비스의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 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9조).
-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고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 바. 광고수용자는 허위·기만·과장 표현 등 유해하거나 부당한 광고로부터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안 제14조).
- 사. 광고사업자는 광고수용자의 보호와 바람직한 광고산업 진흥을 위

하여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광고사업자 및 광고매체사업자는 공정한 광고 거래를 해결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5조).

광고산업 진흥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 써 광고산업을 효과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확산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광고"란 광고주가 상품·서비스 또는 그 밖의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광고매체 등을 통해 광고수용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2. "광고주"란 광고를 시행하는 주체를 말한다.
 - 3. "광고수용자"란 광고주가 광고를 통해 상품, 서비스 또는 그 밖의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을 말한다.
 - 4. "광고매체"란 상품·서비스 또는 그 밖의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 5. "광고산업"이란 광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6. "광고사업자"란 광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 가. 광고의 제작 또는 업무 대행을 의뢰하는 광고주
- 나. 광고매체를 운영하는 광고매체사업자
- 7. "광고매체사업자"라 광고매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광고산업 진흥 및 광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광고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광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관리할 수 있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광고산업 진흥의 기본방향
 - 2.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 3. 광고산업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4.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 5. 광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6. 광고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 7. 광고 관련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 8. 광고수용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 9. 광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광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광고산업 진흥 등에 관하여 광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고산업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광고산업 진흥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사업자, 광고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장 광고산업의 진흥

-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① 정부는 광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광고산업 관련 협회 및 단체, 그 밖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 며,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① 정부는 광고주와 광고사업자 간, 광고사업자 상호간 또는 광고사업자와 광고매체사업자 간에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주, 광고사업자 또는 광고매체사업자

- 등 이해당사자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국제협력 촉진) ① 정부는 외국의 정부·단체 및 광고사업자와 광고산업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광고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 연구
 - 2.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 3. 광고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
 - 4. 국제 및 국내 광고제 개최
 - 5. 그 밖에 광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표준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광고기술·광고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지원을 할 수있다.
- 제9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발된 광고기술이 나 광고서비스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산업의 실태 및 광고 효과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사업자, 광고매체사업자, 그 밖의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고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 2. 광고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3. 광고 전문인력 양성
 - 4. 광고기술 및 광고서비스 등의 표준화 및 개발 지원
 - 5. 광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 6. 광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7. 광고수용자 권익보호
 - 8. 건전한 광고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 9. 광고표현물의 데이터베이스 및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유통·체 계적 관리
 - 10. 광고산업 진흥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 11.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광고산업 진흥 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광고의 공적 책임 등

- 제13조(광고의 공적 책임) 광고는 상품·서비스 등에 관한 진실한 내용을 전달하여야 하고 건전한 광고문화와 사회윤리를 보호해야 할 공적 책임을 진다.
- 제14조(광고수용자 보호) 광고수용자는 허위·기만·과장 표현 등 유 해하거나 부당한 광고로부터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15조(광고사업자 등의 책임) ① 광고사업자는 광고수용자의 보호와 바람직한 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 항을 광고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광고사업자 및 광고매체사업자는 공정한 광고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광고의 자율심의 등) ① 광고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광고주와 광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광고사업자, 광고매체사업자 및 광고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은 광고의 심의를 위해 광고심의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광고심의기구의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광고의 표시기준) 광고 관련 정책에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전한 광고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경고 문구 및 그 밖의 법률에서 광고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광고의 특성에 따른 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광고의 특성에 따른 표시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장 보칙

-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또는 광고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